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2. 16(목) 10:00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01호
- 나. 제 출 자 : 운영회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2. 6.
- 라. 회부일자 : 2023. 2. 6.

## 2. 제안이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 6개월 전 주민등록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경과 시 지원

나. 지원 기준 및 출산지원금을 변경함(안 제4조).

부 또는 모가 장애인 : 50만 원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00만 원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2. 7. ~ 2. 13.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발의 됨.

### 나. 주요 내용

#### 1)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으로 하는 기준을 6개월 전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함

#### 2) 지원 기준 및 출산지원금을 변경함(안 제4조)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만 원	: 150만 원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 100만 원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금천구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원 인원	장애 정도		지원액		전년 대비 증가율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시비	구비	
합계	18	7	11	18,000	5,000	
2020	3	1	2	3,000	-	-
2021	6	4	2	6,000	-	100%
2022	9	2	7	9,000	5,000*	50%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	출산지원금 기준 및 규모		시행 여부
		기준	금액 규모	
1	강 남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2	강 동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X
3	관 악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X
4	광 진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신생아 1명당 50만원	○
5	노 원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신생아 1명당 100만원	X
6	도 봉 구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	1. 모가 장애인 : 150만원 2.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7	동대문구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8	서 초 구	출생일 기준 365일 전 주민등록	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이내	○
9	성 북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만원	○
10	양 천 구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	신생아 1명당 50만원	○
11	영등포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	신생아 1명당 50만원	○
12	용 산 구	출생일 기준 3개월 전 주민등록, 3개월 미만 시 3개월 경과 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13	은 평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14	종 로 구	출생일 기준 10개월 전 주민등록	1.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2.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15	중 구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주민등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16	중 량 구	출생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 1년 미만 시 1년 경과 시	신생아 1명당 50만원	○

- ※ 조례 신설한 16개 자치구 중 3개 출산지원금 사업 미시행(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조례 미제정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